

법관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1. 의결주문

법관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개정이유

- 2020. 9. 25. 시행되는 법원조직법 제43조에 따라 법관의 임용결격사유 중 ‘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의 당선을 위하여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사람의 구체적 범위’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

3. 주요내용

-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의 당선을 위하여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사람의 구체적 범위를 정함(안 제6조의3 신설)

4. 법관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붙임과 같음

5. 신·구조문대비표

붙임과 같음

법관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법관인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6조의3(결격사유)

법 제43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사람은 「공직선거법」 제61조에 따른 선거사무소, 선거연락소 또는 선거대책기구에 설치된 자문단, 고문단, 특보단, 위원회 등 선거관련 조직에 속하여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사람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2020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적용례) 제6조의3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법관으로 임용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신 설></p>	<p><u>제6조의3(결격사유)</u></p> <p><u>법 제43조제1항제7호에에 따른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사람은 「공직선거법」 제61조에 따른 선거사무소, 선거연락소 또는 선거대책기구에 설치된 자문단, 고문단, 특보단, 위원회 등 선거관련 조직에 속하여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사람으로 한다.</u></p>

<의안 소관 부서명>

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실	
연락처	(02) 3480 - 1657